

2024학년도

신입생 입학 전형 요강



2023. 8.

경희고등학교

(www.kyungheeboy.hs.kr)



2024학년도 경희고등학교 입학전형 요강

1 모집 인원 (남 8학급)

모집 구분	모집 전형	모집 정원	비 고
정원 내	일반전형	216명	
	체육특기자 전형	14명	축구종목 14명
	사회통합전형	58명	모집정원의 20%
	소 계(A)	288명	
정원 외	보훈자자녀전형	8명	모집정원의 3% 이내
	고입특례대상자전형	5명	모집정원의 2% 이내
	소 계(B)	13명	
총 모집인원(A+B)		301명	

- 1) 지원자는 일반전형, 체육특기자전형, 사회통합전형, 보훈자자녀전형, 고입특례대상자전형 중 하나의 전형에만 지원할 수 있음
- 2) 사회통합전형은 모집 정원의 20%(58명)를 의무적으로 선발함. (일반전형과 동시 선발함)
- 3) '정원 외' 보훈자자녀전형은 '국가보훈대상자' 중 '교육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하며, 교육지원대상자가 아닌 기타 '국가보훈대상자'는 '정원 내' 사회통합전형 중 '기회균등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음
- 4)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축구 종목은 포지션별 정원(필드 13명, 골키퍼 1명)에 따라 선발함.

2 지원 자격

가. 공통자격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서울특별시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 ※ 학력인정 각종학교, 평생교육시설, 대안학교의 졸업예정자는 학생 거주지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해야 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1조 제1항 및 제97조 제1항)
- 2) 중학교 졸업자로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 3)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로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 4) 다른 시도 소재 특성화중학교 및 전국단위 모집 자율학교로 지정된 중학교 졸업예정자 중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 ※ 성년인 자로서 고등학교에 지원(고등학교 재입학 포함)하는 경우에는 법률 검토 등에 따라 입학이 제한될 수 있음

※ 위 '2)~4)'항의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원서 접수일 현재 '전 가족이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뜻한다.

- 5) 자율형 사립고가 없는 시·도 중 서울특별시교육감과 협의한 지역(경남, 제주, 세종)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중학교 졸업자(학력 인정자 포함)로서 해당 지역(경남, 제주, 세종)에 거주하는 자

나. 전형 유형별 지원 자격 : '가'항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 해당 전형 유형별 지원 자격을 갖춘 자

전형 구분		유형별 지원 자격		
정원 내	일반전형	공통자격을 갖춘 자		
	체육특기 자전형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에서 축구 종목 체육특기자로 선정된 자		
	기회 균 등 전 형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법정차상위계층 또는 그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 또는 11호에 근거하여 주민센터에 등 록된 차상위계층 또는 그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교육지원대상자’가 아닌 경우)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대상자로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교육지원대상자’일 경우 보훈자 자녀 “정원 외”로 지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자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 교육비 지원자 중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자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법정차상위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50% 및 60% 이하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갑작스런 사유로 기준 중위소득 50~60%이 하 수준으로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포함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회의록 제출, 추천위원회의 의견서 작성 및 첨부	
	사 회 통 합 전 형	1 순 위	다문화가족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제14조의2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 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당시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
			도서·벽지 중학교 졸업(예정)자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거주자로서 해당 지역 중 학교 졸업(예정)자
			소년·소녀가장/조손 가족의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이외 소년·소녀가장 또는 조손가족의 자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의 자녀
			순직 군경·소방관·교원·공 무원 자녀	순직군경, 순직소방관, 순직교원, 순직공무원의 자녀
		2 순 위	한부모가족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제5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의 경우 기회균등전형으로 지원
			다자녀가족(3자녀 이상) 자녀	3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족의 자녀(자녀 모두 지원 가능)
			군인 자녀	15년 이상 재직 중인 중령 이하 군인 자녀
			경찰(해양경찰) 자녀	15년 이상 재직 중인 경감 이하 경찰(해양경찰) 자녀
			소방공무원의 자녀	15년 이상 재직 중인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 자녀
			환경미화원 자녀	시·도 또는 군·구 소속으로 재직 중인 환경미화원의 자녀
			목회자 또는 해외 선교사의 자녀	선발교에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로 신청한 유형 중 교육감이 사회통합전형 제도 도입의 원칙과 기준을 고려하여 승인한 자
정 원 외	보훈자 자녀 전형	○ 국가보훈처에서 교육지원대상자로 지정되거나 교육지원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고입특례 대상자 전형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선정되어 통보된 자		

※ 사회다양성전형은 2023년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60% 이하 가정의 자녀에 한해 지원 가능

참고 사항

1. 사회통합전형 중 『기회균등전형』

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지원 학생 **본인이 국가보훈대상자**(교육비지원대상자 제외)이거나 **부 또는 모가 국가보훈대상자인 경우**

【국가보훈대상자 범위 및 근거】

-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3조)
- 고엽제후유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및 그 자녀(「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 5.18민주유공자 및 그 자녀(「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자녀(「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자녀(「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주의) 국가보훈처에서 **보훈자 자녀로 교육지원대상자로 지정되거나 교육지원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사회통합전형과 별개로 시행되는 **보훈자자녀 정원 외 전형 지원 대상임**

【보훈자자녀 정원 외 전형 지원 대상자 근거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5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필요)

【학교장 추천 대상자 선정 요건】

- 부양의무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실업급여 수혜 가정 등)
- 가계 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질병·사고·장애 등으로 인해 근로 능력이 없거나,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자영업자로 폐업·휴업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증빙 서류 예시】

- 실직급여수급증 사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건강보험료 영수증, 급여명세서, 병원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아동복지시설 재원증명서 등

다. 교육비 지원 관련 안내 사항

2024학년도 사회통합전형시 적용된 건강보험료와 재산세 등의 기준은 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과는 **별개**이며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2024학년도 교육비 지원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님

2. 사회통합전형 중 『사회다양성전형』

가. 필수요건

2023년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60%이하 가정의 자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및 재산세 과세 금액은 부모(※ 이혼한 경우 친부 및 친모) 모두 확인·합산하여 기준표 해당 금액 이하인 가구(참고자료1 참고)

※ 직장가입자 및 혼합: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및 재산세(주택분) 과세금액 모두 반드시 충족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충족 (※ 재산세 과세내역 확인 불필요)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산정(원서 제출 기준 최근 6개월 평균액)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2023년 4월 건강보험 연말정산금액은 합산에서 제외

※ 재산세(주택분)는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의 재산세 주택 과세 합산금액임

- 전국에 소유한 모든 주택(아파트)에 대한 납부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토지, 상가 등에 대해 과세된 재산세는 미포함

2023년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60%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및 재산세(주택) 과세금액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재산세(주택) 과세금액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혼합가입자 (직장+지역)	
2인	157,523	197,299	200,343	697,200
3인	229,312	255,791	261,015	1,073,040
4인	293,801	309,670	320,126	1,444,080
5인	354,030	359,887	379,133	1,801,200
6인	436,179	434,962	476,875	2,145,600
7인	481,248	476,875	521,613	2,483,520
8인	527,523	521,613	563,270	2,821,200
9인	570,140	563,270	625,329	3,158,880
10인	628,210	625,329	729,187	3,496,560

*표: 보건복지부 고시(제2022-191호)에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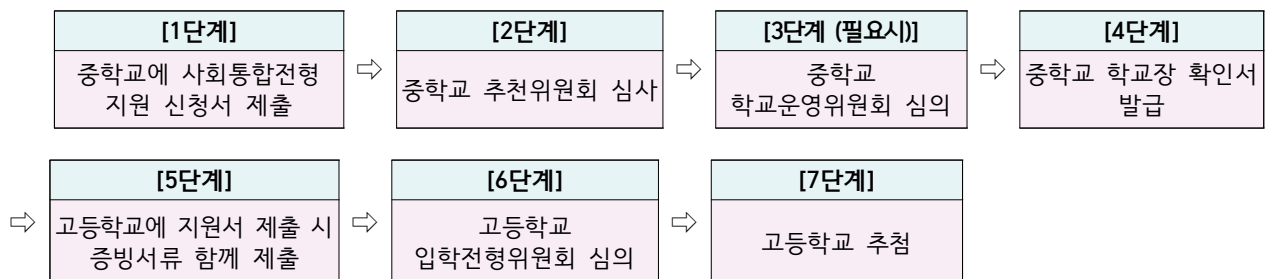
분류	내용
지역가입자	원서 제출 기준 최근 6개월의 부모(※이혼한 경우 친부 및 친모)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평균 금액 합산액이 기준표 해당 금액 이하인 가구 ※ 재산세 과세내역 확인 불필요 ※ “지역건강보험료 전환자 중 임의계속가입자”인 경우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를 추가 제출해야 함
직장가입자 혼합가입자	원서 제출 기준 최근 6개월의 부모(※이혼한 경우 친부 및 친모)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평균 금액 합산액 및 2023년 재산세(주택) 과세금액 합산액 두 조건 모두 기준표 해당 금액 이하인 가구

나. 다문화가족

- 결혼이민자(국적법에 따른 귀화 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단,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을 가진 친부(모)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되었더라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게 지원 자격을 인정함

다. 다자녀가족(3자녀 이상) 자녀 : 자녀 모두 지원 가능(지원 가능 자녀수 제한 없음)하며, 학교별 선발 인원은 사회통합전형 모집 정원의 30% 이내로 제한함

3. 사회통합전형 지원자는 다음과 같이 지원 자격에 대한 심의를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중복 실시함



※ [3단계]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전형에만 해당되며 다른 전형은 추천위원회 심사만 실시

※ 중학교에서 위 [4단계]까지의 절차에 따라 사회통합전형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지원자도 지원 자격 여부를 본교에서 재심의하며, 그 결과에 따라 탈락될 수 있음

4 고입특례대상자(정원 외)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구 분	자 격 요 건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제2호 가목)	국내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 학하여 졸업한 자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제2호 나목)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외국인 학생 (제2호 다목)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북한이탈주민 등 (제3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하여 졸업한 자	

3 제출 서류

가. 제출 시기: 2023.12.6.(수)~12.8.(금) (업무시간 09:00~17:00)

나. 제출 서류(지원자 전원)

대상	유형별 제출 서류		
모든 지원자 (공통)	- 입학원서 1부 (인터넷 접수 후 출력하여 중학교장 확인(직인 날인)) - 주민등록등본 1부(단, 일반전형 지원자 중 서울특별시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는 제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 외국학교를 졸업한 경우는 외국학교의 학력을 인증할 수 있는 각종 서류 ※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관할 재외 한국 영사관(대사관)의 공증 필요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이하 검정고시 합격자)	-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 증명서 또는 합격증 사본 1부 ※ 합격증 사본의 경우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원본대조필 확인		
일반전형	위의 공통 서류 외에 추가 사항 없음		
체육특기자	체육특기자 증명서(출신중학교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발급) 1부		
사회 통합 전형	공통	2024학년도 고입(사회통합·보훈자 자녀·특례대상자) 전형 학교장 확인서 1부[붙임1] 2024학년도 고등학교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부모 확인서 1부[붙임2]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대상: 다문화가족, 다자녀가족, 한부모가족 ※ 자녀(지원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대상: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수급자증명서(구청, 동주민센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1부	
	기회 균등 전형	차상위 자활대상자	자활근로자 확인서(주민센터, 복지로(홈페이지)) 1부
		차상위본인부 담경감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국민건강보험 공단) 1부
		차상위장애 수당대상자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주민센터, 복지로(홈페이지)) 1부
		차상위장애 연금대상자	장애연금 대상자 확인서(주민센터, 복지로(홈페이지)) 1부
		차상위계층 인사발급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주민센터, 복지로(홈페이지)) 1부

대상		유형별 제출 서류		
사회 통합 전형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주민센터, 정부24(홈페이지), 복지로(홈페이지)) 1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관할 보훈지청) 1부(참고자료2 참고)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구청, 동주민센터) 1부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교육비지원확인서(학교) 1부 ※ 재학중인 중학교에서 60%이하임을 명기하여 발급받을 것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 추천	○ 2024학년도 고입 기회균등전형 중 '학교장 추천자' 유형 학교장 추천서 1부[붙임3]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 자료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원서 제출 기준 6개월 평균 납부액 확인)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회의록 ※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추천위원회 의견서 포함 ○ 경제적 형편이 곤란함을 증빙하는 기타 제반 서류 -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내역서(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채권 압류 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 확인서, 급여 명세서, 병원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등 -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가출, 연락 두절, 기타 가정형편으로 부모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학교장 추천서」에 동 사실을 명기 - 어느 한 가지 서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재산세 과세 증명 등을 받아 종합적으로 판단 ○ 아동복지시설 재원증명서	
	사회 다양성 전형	공통	지역건강보험 가입자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원서 제출 기준 6개월 평균 납부액 확인)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혼합(지역+직장)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원서 제출 기준 6개월 평균 납부액 확인) ○ 재산세(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1부 ※ 반드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전국)' 으로 발급받아 제출 (동주민센터 방문 발급, 온라인 발급 불가) ※ 주택을 기준으로 전국단위로 발급받아야 하며 주택이 있는 지역의 과세증명서와 주택 미소유지역에 과세 사실이 없음이 명시된 과세 증명서 모두 발급 필요
		1순위	다문화가족 자녀	○ 부 또는 모가 귀화한 경우 귀화인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 부 또는 모가 외국 국적자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1부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통지서 사본(원본대조필) 1부
			도서·벽지 중학교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증명서 1부

대상		유형별 제출 서류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족의 자녀	○ 사실 관계 확인서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등) 1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원본대조필) 1부 ※ 2019.7.1. 이전 발급 장애인 등록증: 장애 1~3급
		순직 군경·소방관·교원·공무원 자녀	○ 순직군경, 순직소방관, 순직교원, 순직공무원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2순위	한부모가족 자녀	○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다자녀가족 (3자녀 이상) 자녀	○ 추가서류 필요 없음(공통서류인 가족관계 증명서로 확인함) ※ 단, 입양으로 인한 다자녀가정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상세)로 제출
		환경미화원의 자녀 (사·도 또는 군·구 소속 환경미화원)	○ 재직증명서 1부
		군인 자녀(중령 이하)	○ 15년 이상 재직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경찰(해양경찰) 자녀(경감 이하)	
		소방공무원 자녀(소방경 이하)	
		목회자 또는 해외 선교사의 자녀	○ 목회자 또는 해외 선교사 증명서 1부 (붙임7)
보훈자자녀 전형		○ 2024학년도 고입(사회통합·보훈자 자녀·특례대상자) 전형 학교장 확인서 1부[붙임1] ○ 2024학년도 고등학교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부모 확인서 1부[붙임2]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관할 보훈지청) 1부 ※ 국가보훈처에서 교육지원대상자로 지정하여 통보된 자는 증명서 제출 불필요	
고입특례 대상자전형		○ 2024학년도 고입(사회통합·보훈자 자녀·특례대상자) 전형 학교장 확인서 1부[붙임1] ○ 2024학년도 고등학교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부모 확인서 1부[붙임2] ○ 특례 입학 대상 확인서(해당 중학교 발급) 1부 : 경남, 제주, 세종 출신 지원자만 제출	

※ 복지로(보건복지부 운영 복지 포털 사이트) : www.bokjiro.go.kr, 정부24 : www.gov.kr

※ 자세한 민원 서류 인터넷 발급 방법은 「2024학년도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 사회통합전형 추진 계획」 참조

※ 증빙서류는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한 서류에 한함(별도의 유효기간이 설정된 서류는 제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은 영수증, 고지서, 납부확인서 중 택 1

※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해야 함

다. 추가 모집 시

- 입학원서 1부
- 각종 증빙 서류 등 1차 제출 서류 일체

4 전형 일정 및 원서 접수

가. 전형 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유의 사항
온라인 입력 시험 운영	2023.12.1.(금) 09:00 ~ 12.5.(화) 24:00	본교 홈페이지 (온라인 원서접수 사이트)	○ 원서를 입력하여 저장 가능
입학원서 온라인 접수 (전형료 결제)	2023.12.6.(수) 00:00 ~ 12.8.(금) 15:00	본교 홈페이지 (온라인 원서접수 사이트)	○ 전형료 10,000원 결제 (인터넷 접수 수수료 별도) ○ 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확인
서류 제출 (지원자 전원)	2023.12.6.(수) ~ 12.8.(금) (업무 시간 09:00 ~ 17:00)	본교	○ 본교 방문 제출 ○ 입학원서, 각종 확인서 등에 학교장 직인을 날인 후 제출 ○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빙 서류 제출
추첨(공개)	2023.12.12.(화) 14:00	추후 안내	
추첨 결과 발표	2023.12.12.(화) 17:00	본교 홈페이지	
최종 합격자 발표	2023.12.15.(금)	본교 홈페이지	
추가 모집	원서 접수	2024.1.15.(월) ~ 1.16.(화) (업무 시간 09:00 ~ 17:00)	본교
	추첨 전형일	2024.1.17.(수)	본교
	합격자 발표	2024.1.19.(금)	본교 홈페이지
입학 신고 및 예비 소집	추후 공지		
등록금 납부 기간	2024.1.24.(수) ~ 1.26.(금)	추후 안내	

【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온라인 접수 및 전형료 결제가 끝나고 접수번호가 생성되면 접수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됨
- 온라인 접수 후 서류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서류미비로 불합격 처리됨
(1단계 전형료는 환불하지 않으며 다른 학교 지원 불가)
- 전형료 결제 이후 타 학교(국제고, 외국어고, 자율형사립고 등) 지원(전형료 결제)시 이중지원으로 불합격 처리됨

나. 원서 교부 및 접수

1) 원서 접수 방법 및 절차

- ① 본교 홈페이지 접속
- ② 팝업창 또는 입학 안내에 링크된 '원서 접수 바로가기' 클릭
- ③ 원서 접수 사이트 회원 가입 (지원자 본인 명의로 가입)
- ④ 입학원서 예비 입력 및 저장 시작 (2023.12.1.(금) 09:00~)
- ⑤ 입학원서 입력 및 전형료 결제 (2023.12.6.(수) 00:00~12.8.(금) 15:00)
- ⑥ 입학원서, 각종서식 등 출력물을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 직인 받음
- ⑦ 입학원서, 기타 유형별 제출 서류를 본교에 방문하여 제출(우편 접수 불가)
(2023.12.6.(수)~12.8.(금) / 09:00~17:00)

※ 온라인 접수를 실시하므로 실제 입학원서 교부 절차는 없음

※ 지정된 서류 제출 기간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하므로, 반드시 온라인 원서 접수 전에 지원 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바람. 특히 사회통합전형, 보훈자녀전형, 고입특례대상자전형의 경우 지원 자격이 충족되지 않으면 온라인 접수 후 또는 서류 제출 후에도 불합격 처리됨

2) 온라인 원서 접수 및 전형료 결제

- 기간 : 2023.12.6.(수) 00:00 ~ 12.8.(금) 15:00
- 전형료 : 입학원서 입력 시 전형료 10,000원을 온라인 결제하여야 함(인터넷 접수 수수료 별도)

3) 서류 제출

- 기간 : 2023.12.6.(수) ~ 12.8.(금) (업무시간 09:00~17:00)
 - 제출 서류 : 원서 출력물 및 기타 전형 유형별 구비 서류
 - 제출 장소 : 본교 입학접수처 (본교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 제출 서류는 본교에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가 미비하거나 날인이 누락된 경우, 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제출한 경우 '서류 미비'로 불합격 처리됨

5 전형 방법 및 사정 기준

가. 자기주도학습전형 절차

성적 제한 없이 전형 유형별 추천으로 선발

나. 지원율에 따른 선발 방식

지원율	추첨여부	선발 방식
100% 이하인 경우	X	지원자 전원 최종 합격 (단, 본교 입학전형위원회 심의시 결격사유가 발견된 자는 불합격 처리)
100% 초과한 경우	O	추첨

6 전형 유형별 선발 방법

가. 일반전형, 체육특기자전형, 보훈자자녀전형, 고입특례대상자전형

본교의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지원자 중 지원율에 따라 추첨 또는 면접으로 선발

나. 사회통합전형

1) 순위에 따른 단계별 추천으로 선발

순위에 따른 단계별 전형

- 1단계 : 기회균등전형 대상자를 사회통합전형 정원의 60% 우선 선발
- 2단계 : 기회균등전형지원자 중 1단계 우선 선발되지 않은 대상자와 사회다양성전형 1순위 대상자 중에서 선발
- 3단계 : 2단계 미충원 시에 사회다양성전형 2순위 대상자 중에서 선발

※ 사회통합전형 순위별 유형은 지원 자격 참조

※ 단계별 전형으로 전형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는 후순위 지원자는 일반전형으로 전환됨

- 2) 교육지원대상자(정원 외)가 아닌 “국가보훈대상자”는 기회균등전형으로 타 유형의 기회균등전형 대상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선발함
- 3) 다자녀가족(3인 이상) 자녀 선발 인원은 사회통합전형 정원의 30%(17명) 이내로 함

7 합격자 배제 조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격을 배제함

- 가. 제출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
- 나. 전기고(영재학교 제외) 합격자, 타 자사고나 외고·국제고 지원자가 본교에 지원하는 경우 등 이종으로 지원한 자

8 합격자 발표

- 가. 합격자 발표 : 2023.12.15.(금) 본교 홈페이지
 - 나. 합격자 예비소집 : 추후 안내
 - 다. 합격자 등록금 납부 기간 : 2024.1.24.(수) ~ 1.26.(금)
- ※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9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지원

가. 교육비 지원

- 1) 2024학년도 신입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은 2024년에 시행되는 「2024학년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기본 계획」에 따라 지원함
 ※ 단, 실제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 등은 입학 후 변경될 수 있음
- 2) 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비를 신청하여야 하며, 소득·재산 등 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비 지원 여부가 결정됨
 ○ 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하였더라도 교육비 지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교육비 지원 불가
- 3) 참고: 「2023학년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기본 계획」 안내
 ○ 학비 지원 : 법정 저소득 자격 유무에 따라 지원 내용 상이

구분	지원 기준 및 지원 범위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법정차상위 대상자	중위소득 60% 이하
입학금 수업료	전액 지원 (교육급여)	지자체 1/2 교육청 1/2	교육청 전액 지원	
학교운영지원비	교육청 지원 (연 731,000원 이내)			

- ※ 특수교육대상자 학비 지원 사업은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으로 2021학년도부터 단계별 종료
 - 특수교육대상자도 「2024학년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기본 계획」 지원 기준에 따름

-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 지원항목 및 자격

지원 항목(4종)	지원 자격	
①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 ② 수련활동비 ③ 앨범비 ④ 기숙사비	법정저소득자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60%이하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나 그 자녀

- 항목별 지원 단가

지원 항목	단가
1.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비	1인당 500,000원 이내 실비
2. 수련활동비	1인당 200,000원 이내 실비
3. 앨범비(3학년)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4. 기숙사비(기숙사 입사생)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 교육비 지원 신청하여 선정된 법정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은 학기 중 법정 저소득자격이 상실되더라도 당해 학년도 말까지 계속 지원

나. 사회통합전형 학생 맞춤형 적응 프로그램 운영

구 분	프로그램 내용(제목)
학습지원	학습코칭 프로그램
	플래너 작성법, 학습 습관 점검, 과목별 학습법, 내게 맞는 입시 제도의 이해와 준비 등 입시와 관련된 전문적 코칭
진로지도	진로코칭 프로그램
	관심 진로 분야 전문가 선생님과 소규모 그룹 상담으로 진행하는 전공 전문화 상담
입시지도	입시코칭 프로그램
	수시, 정시, 지원 학과, 지원 대학 정보 및 면접 준비까지 전문화된 입시 컨설팅
문화체험	경희브로맨스
	공연관람, 스포츠 활동 등 문화 생활을 즐기면서 선후배간의 돈독한 정을 쌓아가는 활동
정서지원	마음 보살피기
	상담 선생님과 또래와의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정서적인 지원과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활동

※ 상기 프로그램은 교육청의 예산 지원과 본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장학금 지원

구분	내용	대상(백분위)	지원내역	
고향인재Ⅰ (사회통합전형 전체)	중학교 내신	상위 1%	매월 30만원(1학년 1학기)	
		상위 1%~3%이내	매월 20만원(1학년 1학기)	
		상위 3%~5%이내	매월 10만원(1학년 1학기)	
고향인재Ⅱ (기회균등전형)	모의고사 (국어, 수학)	99%	입학금/수업료 국가 및 지자체 부담	매월 30만원 (1학년 2학기부터 지급)
		98%		매월 20만원 (1학년 2학기부터 지급)
		95%		매월 10만원 (1학년 2학기부터 지급)
	중학교 내신	상위 10% 이내		매학기 100만원 + 스쿨버스무료지원
		상위 30% 이내		매학기 50만원 + 스쿨버스무료지원
		상위 50% 이내		매학기 30만원 + 스쿨버스무료지원
		상위 100% 이내		매학기 10만원 + 스쿨버스무료지원
	고향인재Ⅲ (사회다양성전형)	중학교 내신		상위 20% 이내
상위 50% 이내			1학년 1학기/2학기 각 등록금 반액	
상위 80% 이내			1학년 1학기/2학기 각 70만원	

10 기타 유의 사항

가.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7772호, 시행 2021.3.1.) 제2조 및 제7조에 의거하여 2024학년도 입학금과 수업료는 신입생 입학원서 접수 10일 이전에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함

나. 이종지원 금지

- 전기고(영재학교 제외) 합격자, 타 자사고나 외고·국제고 지원자는 본교에 지원할 수 없음
- 이종지원 금지는 서울특별시 관내 고등학교는 물론 타시도 소재 고등학교에도 적용됨

다.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의 기재 내용 중 사실이 아는 것이 확인될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라. 불법, 부정행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자는 입학한 후에도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함

마. 지원자는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사진을 인터넷 접수 시 업로드하여야 함

바. 입학원서에 기재된 개인 정보는 신입생 입학 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따라 수집·이용·제공됨

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아.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 참조 또는 대외협력부에 문의

<입학관련 문의>

(우)0244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이문동)

홈페이지 : www.kyungheeboy.hs.kr

대표전화 ☎ 02)966-3782, FAX 02)962-3649

대외협력부 ☎ 02)3299-3706, 010-4086-4059

① 가구원 수 산정 시 유의사항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해당 학생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 및 2촌 이내의 형제·자매 [**※(외)조부, (외)조모 제외**]
- ※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 또는 미혼인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 기혼인 형제·자매의 경우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경우 포함(단, 원수접수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경우만 인정). 주민등록을 같이 하지 않는 경우 미포함
-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족의 경우 **이혼한 배우자(친부 또는 친모)를 포함하여** 가구원 수 산정

②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인 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에 부모 중 1명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제출)에 부모가 모두 있는데 건강보험증 사본에 학생만 있거나 부모 중 한 명만 있는 경우 반드시 부모 모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금액을 확인하여 합산
- ※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족의 경우 친부와 친모 건강보험료 합산
- 학생이 직장에 다니는 형제·자매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 확인하여 합산

③ 건강보험료 산정 및 적용 방법

- (산정) 건강보험증에 부양자로 등록된 부모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합산한 금액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연말정산금액(분할)납부청구액**은 제외)
- 소득이 없는 달(한시적으로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간 경우)은 기간에 산정하지 않음
- 휴직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시 휴직 전 납부된 건강보험료로 산정
- ※ 입학 지원서 제출 당시 복직한 경우 복직 후 납부한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6개월 평균 건강보험료로 산정
- (적용)
- ※ 부모가 각각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와 모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
 - 부모가 각각 지역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지역보험료 기준 적용**
 - 부모가 각각 다른 직장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직장보험료 기준 적용**
 - 부모가 각각 지역건강보험과 직장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혼합보험료 기준 적용**
- (사례)
- 아버지는 직장건강보험 부양자로 4만원 납부하고 어머니는 지역건강보험 부양자로 2만2천원 납부하는 4인가구의 경우 : 4만원(부)+2만2천원(모)⇒가구 건강보험료(혼합 6만2천원)

※ 기타 건강보험료 산정 및 사례는 '사회통합전형 Q&A' 참조

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보훈대상자로서 아래 증명서류 발급이 가능한 경우

예시)

1. 증조 할아버지께서 독립유공자로서 지원 학생의 **부가 독립유공자 유족 확인원 발급이 가능**한 경우 지원 가능
2. 외할아버지께서 6.25 참전용사로 전사하여 **모가 국가유공자 유족 확인원 발급이 가능**한 경우 지원 가능
3. 할아버지께서 참전유공자인데, 부(또는 모)는 국가보훈대상자 아닌 경우 지원 불가

대상자	근거	증명서류
■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	독립유공자(유족) 확인원
■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 제18호, 제73조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지급대상자) 및 그 자녀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대상자 사망시 교육지원대상자이므로 정원의외 '보훈자자녀전형'으로 지원하여야 함
■ 5·18민주유공자 및 그 자녀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 제3호	5·18민주유공자 (유족) 확인원
■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자녀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 제3호	특수임무유공자 (유족)확인원
■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자녀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1호~제4호	보훈보상대상자 (유족)확인원

※ 국가보훈처에서 교육지원대상자로 지정되거나 교육지원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정원의 외 보훈자자녀전형 대상으로 별개 사항임

[붙임1]

2024학년도 고입 (사회통합·보훈자 자녀·특례대상자)전형

학 교 장 확 인 서

발급 번호 2023 -

성 명				성별	남 , 여	생년월일						
주 소												
출신학교 (검정고시)		() 중학교 ()년 2월 (졸업 / 졸업예정) () 지역 ()년 ()월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										
전형 유형				순위	지원 자격							
정 원 내	사회 통합 전형	기회균등전형		60% 우선	유형 ()							
		사회다양성전형		1순위	유형 (), 가구원 수 (인)							
				2순위	유형 (), 가구원 수 (인)							
정 원 외	보훈자 자녀전형				교육지원대상자 ()							
	고입 특례대상자전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3항 제()호 ()목 대상자							
위 학생을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에 따라 해당 지원 유형 및 지원 자격에 적합하게 선정하였음을 서약하며, 위 학생을 2024학년도 고입 (사회통합, 보훈자 자녀, 특례대상자) 전형 대상으로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 중학교장 (직인) 경희고등학교장 귀하												

※ 발급 번호 : 중학교별(또는 교육지원청)로 확인서를 발급한 연번호 기재

※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출신학교'란에 '검정고시' 합격 지역 및 연월 기재, 확인자는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서명 또는 인)

※ 지원 유형

－ 기회균등전형 : () 안에 해당 지원 자격 기재

－ 사회다양성전형 : () 안에 해당 지원 자격 및 가구원 수 기재

－ 보훈자 자녀전형 : 정원 외 교육지원대상자의 경우 () 안에 '○' 표시

(교육지원대상자가 아닌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제출자는 기회균등 전형에 기재)

－ 고입 특례대상자전형 : () 안에 『서울특별시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통보 결과 기재

*서울특별시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에서 8월 중 관련 지침 안내, 9~11월 심사 진행

[붙임2]

2024학년도 고등학교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부모 확인서

접수 번호	2023 -
-------	--------

[illegible]

- ※ 접수 번호 : 사회통합전형, 보훈자 자녀전형, 고입 특례대상자 전형별 접수 번호 기재
※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출신학교’란에 ‘검정고시’ 합격 지역 및 연월 기재
※ 지원 유형
- 기회균등전형 : () 안에 해당 지원 자격 기재
 - 사회다양성전형 : () 안에 해당 지원 자격 및 가구원 수 기재
 - 보훈자 자녀전형 : 정원외 교육지원대상자의 경우 () 안에 ‘○’ 표시
(교육지원대상자가 아닌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제출자는 기회균등 전형에 기재)
 - 고입 특례대상자전형 : () 안에 『서울특별시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통보 결과 기재
- *서울특별시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에서 8월 중 관련 지침 안내, 9~11월 심사 진행

[붙임3]

2024학년도 고입 기회균등전형 중 ‘학교장 추천자’ 유형

학교장 추천서

발급 번호 2023 -

성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출신학교	() 중학교 ()년 2월 (졸업 / 졸업예정)									
지원유형	기회균등전형(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 추천)									
증빙 서류										

추천 사유(※ 학교장 추천 요건만 기재할 것, 3쪽 참조)

2023년 월 일

() 중학교장 (직인)

경희고등학교장 귀하

※ 발급 번호 : 중학교별(또는 교육지원청별)로 추천서를 발급한 연번호 기재

※ 중학교에서 ‘2024학년도 사회통합전형 추진계획’에 따라 대상자 유형, 증빙 서류, 추천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등 심의 절차를 거쳐 추천 대상으로 확정된 학생에 한해 추천서 발급
(지원 고등학교에 ‘학교장 확인서’와 ‘학교장 추천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회의록’ 등 증빙 자료 모두 제출)

[붙임4] ※ 입학원서 서식은 참고용으로만 공개하는 것이며, 실제로는 인터넷 원서 접수 사이트에 해당 부분을 입력한 후 최종 출력물을 제출해야 함. 사진도 별도로 부착하지 않고 인터넷 원서 접수 사이트에 업로드하면 원서와 수험표에 자동으로 인쇄됨

2024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원서

접수번호				수험번호		※ 추후 면접 시 본교에서 부여함	
지원자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연락처	본인 휴대전화	☎	
	주 소	우편번호:			보호자 휴대전화	☎	
					출신중학교	☎	
	학 력	년 월 중학교 학년 반 번 [졸업예정() · 졸업() ·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합격()]					
중학교 주 소	우편번호:						
전형 구분				사회통합전형 유형			
담임교사 확인		()학년 ()반 담임교사 () 인					

사 진 (3cm x 4cm) 최근 3개월 이내 출신학교장 직인	위 학생은 2024학년도 귀교 제1학년에 입학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2023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날인) 보호자: (서명 또는 날인)
--	---

경희고등학교장 귀하

위의 기재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증명하며, 위 학생이 귀교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이에 추천합니다.

2023년 월 일

(
)중 학교 장
(직인)

※ 검정고시 합격자는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날인(사진에도 날인)

[붙임5]

입학원서 (1차 서류) 접수증	
접수번호	
성명	
2024학년도 경희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원서를 위와 같이 접수합니다. 2023년 12월 일 경희고등학교장	

절취선

1차 서류 접수 현황 (학교 보관용)		
접수번호		
성명		
출신중학교		
전형 구분		
사회통합전형 유형		
연락처	본인 휴대전화	
	보호자 휴대전화	
	출신중학교	
제출 서류 1. 입학원서 1부 2. 3. 4. 5. 6. 7. 8. 9. 10. ※ 2. ~ 10.에는 추가로 제출한 서류를 직접 기재하세요.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안내

본 입학원서에 기재된 지원자의 개인정보는 신입생 입학 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도록 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제공 됩니다.

[개인정보 처리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제82조, 제85조, 제86조, 제91조의3, 제97조, 제104조의7, 제106조의3 및 본교 입학전형 실시 계획

1.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 지원자 : 이름, 생년월일, 성별, 증명사진, 연락처, 주소, 학력, 출결사항
- 보호자 : 이름, 연락처, 계좌번호, 생년월일, 건강보험료 또는 재산세 납부 실적*, 출입국사실**
- * 사회통합전형 해당자에 한함, **고입특례대상자전형 해당자에 한함

(목적) 신입생 선발 및 입학 관리 업무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제82조, 제86조, 제91조의3, 제97조, 제104조의7, 제106조의3

2. 민감정보 수집 · 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학생 및 학부모 장애 정보(사회통합전형 중 해당자에 한함)

(목적) 신입생 선발 전형 중 사회통합전형 지원 자격 확인

(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3

3. 제3자 제공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공받는 기관) 출신 중학교,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중앙방역대책본부, 경기도 교육청

(제공받는 기관의 목적) 지원 자격 · 지원 결격 사유 조회, 이중지원 확인, 자기소개서 유사도 검증, 코로나19 관리대상자(확진자, 자가격리대상자) 확인

(제공 항목) 학생 이름, 학년, 반, 번호, 성별, 생년월일, 출신 중학교명, 지원 고등학교명, 합격·불합격 여부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제82조, 제85조, 제86조, 제106조의3

[붙임7]



2024학년도 고입 사회다양성 전형

목회자 또는 해외 선교사 증명서

발급번호	2023 -
------	--------

학생	성명		출신 학교		생년월일				
학부모	성명		직급	담임목사	부목사	교목	해외 선교사	전도사	
	생년월일								
	근무지								
	교회주소								
	근무기간								
	연락처	교회					자택		

위 학생의 부모(목사, 해외선교사, 전도사)는 본 교단 소속의 목회자임을 증명합니다.

※ 목회자란 : 개신교 4년제 정규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았거나 교회, 학원, 선교기관에서 근무하는 자로 교단에서 목회자 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자

2023년 월 일

() 노회장 (감리사, 감독, 총회장) (직인)

경희고등학교장 귀하